대전광역시 중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jjunggu.g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240호

2021. 8. 19.(목)

차 례

공 고

○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2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공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 대전광역시 중구 / 편집 : 공보담당(우349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0 ☎ 606-6164, Fax 606-7910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877호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공고합니다.

≪공 고 현 황≫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7.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1.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1. 8. 1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876호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2021.1.1. 시행)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기준액 결정권 지방이양 사항 반영 및 훈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

나. 예산집행품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정함 (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제5조・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회계정보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6051), FAX(042-606-7914),

이메일(go0331@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정보과 담당자 고현진(전화: 042-606-60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6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실·과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9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통사항 제9호 예산집행품의 세부사무명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통사항 (제4조 관련)

단 위 사무명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 당 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주사				
9.예산집행 품의	1. 공사 또는 토지 매입						
	가. 추정금액 4억원 초과	기안					○
	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	기안				○	
	다.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		
	라.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	기안		○			
	2.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가. 추정금액 2억원 초과	기안					○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	
	다.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라.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	기안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항						
	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초과	기안					○
	나.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다. 1건당 추정금액 6천만원 이하	기안			○		
	라. 1건당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	기안		○			
	4. 1건당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기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1. ---------- 4억원 ---------- 2억원 ---------- 1억원 ----------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6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실·과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 4천만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위사무명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자	담당주사				
9.예산집행품의	1. 공사 또는 토지 매입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2.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항						
	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항	기안				○	
	나.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항	기안			○		
	4.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기안		○			
	5. 임시 일상경비	기안			○		

개 정 안

[별표 1]

공통사항(제4조 관련)

단위사무명	세부사무명	기안 및 전결권자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자	담당주사				
9.예산집행품의	1. 공사 또는 토지 매입						
	가. 추정금액 4억원 초과	기안					○
	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	기안				○	
	다.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		
	라.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	기안		○			
	2.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가. 추정금액 2억원 초과	기안					○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	
	다.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라.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	기안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항						
	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초과	기안					○
	나.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기안				○	
	다. 1건당 추정금액 6천만원 이하	기안			○		
	라. 1건당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	기안		○			
	4. 1건당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기안		○			
	5. 임시 일상경비	기안			○		